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부담하는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